

■ [별지 제2호서식]

채무조정 요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3.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4.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2.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5.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 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 본 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 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 회 동의서	3. 채무조정 안	4. 변제능력 입증자 료
------------	---------------------------------	--------------	------------------

※ 상기 서류외에 심사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_____ (인)